

(2023학년도 제17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4. 01. 11.(목), 15:30 ~ 17:00
- 장소: 혁신지원팀 회의실(문화관 301호)
- 심의 안건

안건	입안부서
1. 「직제규정」 개정 건	학생복지팀
2. 「업무분장규정」 개정 건	
3. 「위임전결규정」 개정 건	
4. 「우석사회봉사규정」 개정 건	
5. 「직제규정」 개정 건	역량개발 인증센터
6.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 건	
7.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8.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건	교학팀
9.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제정 건	미래융합대학 통합행정실
1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 건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기획예산팀

1.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이견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1998년도 1주기 대학평가에 대비하여 우석사회봉사규정(구, 우석봉사단규정)을 제정하고 주관부서를 사회봉사실로 규정하였으나 직제에 사회봉사실을 설치하지 않고 직원봉사는 총무팀이 학생과 교수봉사는 학생복지팀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여 왔음 - 이후 이원화된 사회봉사 업무를 사회봉사실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회봉사실의 부재로 학생복지팀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교양대학 신설 후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교육지원센터로 이관하게 되는 등 관련 업무에 혼란이 있어왔음 - 이에, 현 주무처인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을 정규 직제로 설치하고 업무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무위원회 논의 (2023.11.28.)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4조(학생취업처) 사회봉사실 직제 신설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 - 제36조(기구표) 별표 개정		
기대효과	•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있음	
첨부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실 신설) 를 둔다.	제24조(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에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을 둔다 (개정 2024.00.00.)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4.00.00.)						
[별표] 기구표	[별표] 기구표						
<table><tr><td>대학본부</td><td>학생취업처</td><td>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실 신설)</td></tr></table>	대학본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실 신설)	<table><tr><td>대학본부</td><td>학생취업처</td><td>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td></tr></table>	대학본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대학본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실 신설)					
대학본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신 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00.0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업무분장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이견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에 따른 연관규정(업무분장, 위임전결)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무위원회 논의 (2023.11.28.)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6조(학생복지팀) 제18호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 삭제 • 제16조의2(사회봉사실) 조 신설		
기대효과	•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6조(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7. (생략) <u>18.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u> <u>가.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계획 수립</u> <u>나.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u> <u>다.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섭외와 관리</u> <u>라.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u> <u>마. 사회봉사단의 조직 및 관리</u> <u>바.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활동</u> <u>사. 사회봉사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u> <u>아.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u>	제16조(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7. (생략) <u>18. <삭제 2024.00.00></u>
(조 신설)	<u>제16조의2(사회봉사실) 사회봉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 <u>1. 사회봉사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u> <u>2.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u> <u>3. 사회봉사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업무</u> <u>4. 사회봉사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u> <u>5.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조사에 관한 업무</u> <u>6.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u> <u>7.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u> <u>8. 사회봉사단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u>9. 대학구성원 사회봉사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u> <u>10. 사회봉사경진대회 및 사회봉사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u> <u>11.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u> <u>[본조 신설 2024.00.00.]</u>
<신 설>	<u>부 칙</u> <u>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3.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에 따른 연관규정(업무분장, 위임전결)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무위원회 논의 (2023.11.28.)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0조(전결사항) 별표 2 - 학생복지팀 단위업무 13번 삭제 - 사회봉사실 전결사항 신설		
기대효과	•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u>별표 2</u>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2023.9.27., 2023.10.26.)					제10조(전결사항) 각 캠퍼스별 공통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부서별 전결사항은 <u>별표 2</u> 와 같다. (개정 2019.9.4., 2020.6.18., 2020.10.8., 2020.11.25., 2020.12.29., 2021.2.25., 2021.5.13., 2022.1.3., 2022.2.18., 2022.4.14., 2022.5.24., 2022.10.13., 2023.1.30., 2023.6.9., 2023.7.12., 2023.9.27., 2023.10.26., <u>2024.00.00.</u>)																																																													
[별표 2] 학생복지팀					[별표 2] 학생복지팀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처장</th><th>팀장</th></tr><tr><td>1~17 생략</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6">13. 사회봉사</td><td>프로그램개발</td><td></td><td>○</td><td></td></tr><tr><td>수상신청자관리 및 활동시간관리</td><td></td><td></td><td>○</td></tr><tr><td>단체 및 기관 섭외와 관리</td><td></td><td></td><td>○</td></tr><tr><td>추진계획 수립</td><td></td><td>○</td><td></td></tr><tr><td>농촌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td><td></td><td>○</td><td></td></tr><tr><td>기타 봉사활동관리 및 지도</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17 생략					13. 사회봉사	프로그램개발		○		수상신청자관리 및 활동시간관리			○	단체 및 기관 섭외와 관리			○	추진계획 수립		○		농촌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		○		기타 봉사활동관리 및 지도			○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처장</th><th>팀장</th></tr><tr><td>1~17</td><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tr><td>13. 사회봉사</td><td><삭제 2024.00.00></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17	현행과 같음				13. 사회봉사	<삭제 2024.00.0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17 생략																																																																		
13. 사회봉사	프로그램개발		○																																																															
	수상신청자관리 및 활동시간관리			○																																																														
	단체 및 기관 섭외와 관리			○																																																														
	추진계획 수립		○																																																															
	농촌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		○																																																															
	기타 봉사활동관리 및 지도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1~17	현행과 같음																																																																	
13. 사회봉사	<삭제 2024.00.00>																																																																	
<u>(신설)</u>					사회봉사실 (<u>신설 2024.00.00.</u>)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업 무</th><th rowspan="2">총장</th><th colspan="2">전결권자</th></tr><tr><th>처장</th><th>실장</th></tr><tr><td rowspan="3">1. 운영계획 및 평가</td><td>사회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사회봉사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2. 업무협력</td><td>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 rowspan="2">3. 교육 및 정보제공</td><td>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조사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4. 사회봉사교과목</td><td>사회봉사교과목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5. 사회봉사단</td><td>사회봉사단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 rowspan="3">6. 기타사항</td><td>대학구성원 사회봉사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사회봉사경진대회 및 사회봉사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r><td>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실장	1. 운영계획 및 평가	사회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업무		○		2. 업무협력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			○	3. 교육 및 정보제공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4. 사회봉사교과목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5. 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6. 기타사항	대학구성원 사회봉사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경진대회 및 사회봉사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실장																																																														
1. 운영계획 및 평가	사회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업무		○																																																															
2. 업무협력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			○																																																														
3. 교육 및 정보제공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4. 사회봉사교과목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																																																														
5. 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6. 기타사항	대학구성원 사회봉사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																																																														
	사회봉사경진대회 및 사회봉사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																																																														
<u><신 설></u>					부 칙 <u>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4.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사회봉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교원인사팀 교양교육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에 따른 연관규정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무위원회 논의 (2023.11.28.) - 학생취업처 산하에 사회봉사실 신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조(업무) 제5호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업무가 교양교육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지원으로 변경 • 제4조(구성) 제1항 - 사회봉사실을 학생취업처 산하에 신설하고 팀격인 사회봉사실의 장은 학생복지팀장이 겸하도록 함 • 제6조(구성) 제2항 - 교원의 봉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교원인사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학사관리팀장을 당연직에서 삭제함		
기대효과	•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명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우석사회봉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우석사회봉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업무) 사회봉사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활동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섭외와 관리 4. 사회봉사 활동자의 교육과 배치 5. <u>사회봉사 교과목 운영</u> 6. 사회봉사장학금 대상자 선정 7.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3조(업무) 사회봉사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활동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 4. 사회봉사 활동자의 교육과 배치 5. <u>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지원</u> 6. 사회봉사장학금 대상자 선정 7.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4조(구성) ①사회봉사실장은 <u>학생취업처장</u>이 하며, 사회봉사실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회봉사실에는 학생봉사부, 교수봉사부, 직원봉사부를 두며, 학생, 교수, 직원의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사회봉사실에는 사무직원, 행정조교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사회봉사실장은 <u>학생복지팀장</u>이 하며, 사회봉사실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회봉사실에는 학생봉사부, 교수봉사부, 직원봉사부를 두며, 학생, 교수, 직원의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사회봉사실에는 사무직원, 행정조교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②학생복지팀장, <u>학사관리팀장</u> 및 총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②학생복지팀장, <u>교원인사팀장</u> 및 총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u><신 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5.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역량개발인증센터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이견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융합전공 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 • 재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융합교육에 대한 체계적 확산 및 재정비														
관련근거 (관계법령)	• 「융합전공운영규정」 제3조(개설 및 폐지) 제6항 ⑥개설된 융합전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3학기* 연속으로 융합전공 누적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022학년도 2학기, 2023학년도 1학기, 2023학년도 2학기임) 2. 최소 4개학기 운영 후 시점에서 4학기 연속으로 이수학점 취득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3. 기타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혁신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완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 [별표] - 해양관광융합전공 신설 -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삭제* *폐지 사유: 3학기 누적 신청 인원 10명 미만 ※ 참고 <table><tr><th>구분</th><th>융합전공명</th><th>참여학과</th></tr><tr><td>신설</td><td>해양관광융합전공</td><td>관광학과, 소방방재학과</td></tr><tr><td>폐지</td><td>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td><td>군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td></tr><tr><td>폐지</td><td>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td><td>소방행정학과,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td></tr></table>			구분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신설	해양관광융합전공	관광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군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폐지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소방행정학과,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구분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신설	해양관광융합전공	관광학과, 소방방재학과													
폐지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군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폐지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소방행정학과,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기대효과	• 미래 신산업 수용에 대응하는 창의 융합형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전공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 예정													
첨부자료	「직제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u>2024.00.00.</u>)
[별표] 기구표 (융합학부 부분 발췌) 〈융합학부: 전주캠퍼스〉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u>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삭제>, (전공 신설)</u> 〈융합학부: 진천캠퍼스〉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u>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삭제></u>,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신설)	[별표] 기구표 (융합학부 부분 발췌) 〈융합학부: 전주캠퍼스〉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u>해양관광융합전공</u> 〈융합학부: 진천캠퍼스〉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 <u>(2024.00.00.)</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6.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역량개발인증센터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이견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융합전공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학위 수여 명칭 신설 • 재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융합교육에 대한 체계적 확산 및 재정비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육혁신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완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제55조(학위수여) 학사학위증서 [별표3] 학사학위의 종류 - 해양관광학사 수여학위 및 해양관광융합전공 신설 ※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재학생 7명, 휴학생 11명),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재학생 5명, 휴학생 11명)은 재적생이 존재하여 수여학위는 유지하고자 함			
기대효과	• 미래 신산업 수용에 대응하는 창의 융합형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전공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 예정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5조(학위수여)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2023.2.20.)	제55조(학위수여) ③학사학위의 종류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6.25., 2014.8.25., 2016.5.27., 2017.2.27., 2017.5.24., 2018.4.6., 2019.3.1., 2019.4.11., 2020.2.28., 2020.8.27., 2021.1.14., 2022.1.27., 2022.12.16., 2023.2.20., 2024.00.00.)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예술경영학사	경영학부(예술경영전공)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학위 신설)	(전공 신설)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법 학 사	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공 학 사	제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제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융합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음악학사	국악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e스포츠융합전공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교양학사트랙

개 정(안)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수여학위	학과, 전공 및 트랙
문 학 사	아동복지학과, 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영어과, 중국어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국제언어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가족복지전공)
경영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경영학과, 유통통상학부(유통비즈니스전공), 보건의료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전공), 스포츠마케팅학과
경제학사	유통통상학부(무역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무역전공)
예술경영학사	경영학부(예술경영전공)
관광학사	호텔항공관광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관광학과, 관광학과
<u>해양관광학사</u>	<u>해양관광융합전공</u>
언론학사	광고이벤트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부, 미디어영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소방행정학사	소방행정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과
법 학 사	법학과
군사학사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공 학 사	제약공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국방기술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보건의료정보공학연계전공, 디지털커머스연계전공, 스마트제약공학연계전공, 빅데이터물리치료연계전공, 빅데이터헬스케어연계전공, 인공지능경영연계전공, 디지털광고홍보연계전공, ICT생명과학연계전공, 국방정보융합연계전공, 전기자동차공학부(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부(컴퓨터전공, AI융합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토목재난안전공학과, 군사기술학과
이 학 사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정보보안학과, 응용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학교육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에코바이오학과,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물리치료학과, 스마트농식품연계전공, 재활상담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생명영양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한의학사	한의학과
한약학사	한약학과
약 학 사	약학과
교육학사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음악학사	국악과
미술학사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체육학사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e스포츠융합전공
예술학사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뮤지컬학과
스포츠관광학사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학사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학사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스마트재난안전학사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바이오정보시스템학사	바이오정보시스템융합전공
임상운동학사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학사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소방안전학사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학사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도시재생학사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교양학사	교양학사트랙

7.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수업운영에관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내 규정 반영 요청(교육부 점검사안) • 결석신고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민원 발생		
관련근거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제1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8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신설 • 제9조(결석신고서 제출) 개정 - 처리 절차 개정		
기대효과	• 상위법령에 따라 합치 및 명확화 • 향후 교육부 실태점검에 대비 • 결석신고서 학기내 제출로 변경을 통한 제출 누락 예방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1. 「수업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2.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에 관한 학내 규정 반영 요청 공문		

「수업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출석인정) ①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 colspan="2">출석인정사유</th><th>기간</th></tr><tr><td colspan="2">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td><td>7일 이내</td></tr><tr><td colspan="2">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td><td>3일 이내</td></tr><tr><td colspan="2">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td><td>훈련 당일</td></tr><tr><td colspan="2">본인이 결혼하는 경우</td><td>7일 이내</td></tr><tr><td colspan="2">교육실습 중인 경우</td><td>실습기간</td></tr><tr><td colspan="2">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td><td>해당 시험 당일</td></tr><tr><td colspan="2">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td><td>14일 이내</td></tr><tr><td rowspan="2">출산의 경우</td><td>본인</td><td>20일 이내</td></tr><tr><td>배우자</td><td>10일 이내</td></tr><tr><td colspan="2">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td><td>해당기간</td></tr></table> ②~④ (생략)	출석인정사유		기간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7일 이내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3일 이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당일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교육실습 중인 경우		실습기간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당일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		14일 이내	출산의 경우	본인	20일 이내	배우자	10일 이내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제8조(출석인정) (현행과 같음)
출석인정사유		기간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7일 이내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3일 이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당일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교육실습 중인 경우		실습기간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당일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난치병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		14일 이내																															
출산의 경우	본인	20일 이내																															
	배우자	10일 이내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		해당기간																															
<u>(조 신설)</u>	<u>제8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u> ①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결석신고서 제출) 결석 사유가 발생한 자는 <u>(문구 삭제)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u>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사관리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u>(문구 신설)</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결석신고서 제출) 결석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사관리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u>해당학기 종강일 전까지</u>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8.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3조(최종학위청구논문 제출부수 등) 학위청구 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완성본 파일과 제본된 학위청구논문(검정색 하드커버) <u>4부</u>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u> ,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u>중 3부</u> 에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최종학위청구논문 제출부수 등) 학위청구 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완성본 파일과 제본된 학위청구논문(검정색 하드커버) <u>2부</u>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u>(문구 삭제)</u>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u>2부</u> 에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u>부 칙</u>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최종학위청구 논문 제출부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원생이 학과변경을 희망할 시 지도교수가 허락해 주지 않아 민원 발생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탈 발생 가능→재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필요 • 학과(전공) 변경의 절차 간소화 필요 • 학부의 학사운영규정과 동일한 절차 진행 적용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9조(모집단위간 이동절차) 모집 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단위간 이동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학과(부)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심의일: 2023.12.19.)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3조(학과, 전공변경) 제2항			
	- “지도교수” 의 동의 문구 삭제			
기대효과	• 학과(전공) 변경의 절차 간소화			
	• 재학생 이탈 방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학과 의견조회 협조문 발송		
	나. 의견수렴기간	2024.01.05.(금) ~ 01.08.(월)		
	다. 의견제출 유무	유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개정(안)에 동의		
첨부자료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개정관련 학과(전공) 의견수렴 내부결재 1부			
	3. 학과(전공) 의견수렴서 1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학과,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u>지도교수 및 학과(전공)</u>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학과(전공)변경신청서를 <u>등록 기간 내에</u>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학과, 전공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u>지원 학과(전공)</u>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학과(전공)변경신청서를 <u>(삭제)</u>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9.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통합행정실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규정 정비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규정 정비		
기대효과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의 성과 기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안) 1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
3. 성인친화형 교육 및 학사 운영
4. 그 밖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관한 업무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①본 사업은 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에서 수행한다.

②사업단장은 부총장급으로 선임하며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③사업부단장의 부단장은 미래융합대학장으로 하며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운영 및 사업의 성과를 관리한다.

④미래융합대학에 사업 전담 행정조직인 통합행정실을 둔다.

⑤성인학습자의 학습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교육혁신본부에 둔다.

⑥교육혁신본부에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두고 성인학습자의 학습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제4조(통합행정실 기능) 통합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편성, 개설 및 운영 지원
2. 미래융합대학 학사관리 지원
3. 사업 운영계획 수립
4.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5. 사업 운영 인력 채용 계획 수립 및 관리
6. 사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지원
7. 평생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 및 산업체 협력활동 지원
8.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평생학습지원센터 기능) 평생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교수법 개발 및 보급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성과 분석
3.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진단 및 연구
5.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위원회

제6조(사업추진위원회) ①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②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행정실장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사업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3.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4. 그 밖에 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5.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중요 사항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행정실장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대학 본부 주도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관리
2.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본부 및 타 부서와의 연계 협력사항 논의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운영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행정실장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성인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2. 성인학습자 지원을 위한 비학위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3.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4. 성과지표 달성 전략 수립 및 달성도 점검
5.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평가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성과관리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융합대학 학과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및 통합행정실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관리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사업비는 대학(교비) 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집행한다.

②사업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대학 자체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관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 법령 및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0.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통합행정실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성인학습자의 학습권 등에 관한 학사운영 규정 신설		
관련근거 (관계법령)	• 미래융합대학 직제 신설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제정 - 적용범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입학자격, 수강신청, 수업방법, 학년수료, 졸업사정 및 심사요건 등		
기대효과	• 미래융합대학 안정화 • 향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현장점검 및 운영점검에 대비 •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 및 학교 이미지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안) 1부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융합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하 “미래융합대학”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제3조(미래융합대학장) ① 미래융합대학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미래융합대학장은 미래융합대학을 대표하며, 미래융합대학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학과) 미래융합대학에 설치하는 학과는 우석대학교 학칙 [별표1]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른다.

제5조(통합행정실) 미래융합대학에 통합행정실을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미래융합대학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 미래융합대학 학과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미래융합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통합행정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교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학사운영 일반

제7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학생의 근무 여건의 변화 및 수강 수요에 따라서 하계 계절수업과 동계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로 한다.

제9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미래융합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은 제1항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자격) ① 정원 내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자
2.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고졸학력 이상의 성인 학습자
- ② 정원 외 입학자격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모집단위간 이동) ①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모집단위에 한하여 재학 중 1회 에 한하여 모집단위간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모집단위간 이동은 제3차 학기 진급대상자(1학년 수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휴학·복학) ①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휴학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된다. 다만, 휴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 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이수, 수업 및 성적평가

제13조(교육과정) ① 미래융합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 및 전공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양은 교양필수 과목과 전공은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필수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필수포함)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그 밖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수학점) ① 미래융합대학의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개설과정에 한하여 다중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다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 전공(필수포함) 36학점과 복수전공(필수포함) 36학점 이상 이수
2. 주 전공(필수포함) 57학점과 부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3. 주 전공(필수포함) 36학점과 학생설계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4. 주 전공(필수포함) 57학점과 마이크로전공 최소 9~12학점 이상 이수

제15조(특별지도) ① 미래융합대학 학과장들은 해당학과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은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강신청) ① 1학과 2학기의 최대 수강학점은 각 15학점으로 하고, 계절수업 최대 수강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 ② 매 학기 최소 수강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학생의 매 학년도 수강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최대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1학기 또는 2학기의 수강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92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항의 최대 수강학점은 3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17조(수업방법) ① 미래융합대학의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한 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출석수업은 교내에서 야간 또는 주말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외의 고정강의실, 근무지 강의, 이동 강의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원격수업은 음성강의(AOD : Audio on Demand), 동영상 강의(VOD : Video on Demand), K-MOOC 등의 온라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수업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업 운영) ① 수업은 평일 주·야간과 주말(토요일)에 운영한다.

② 개설과목은 온라인 또는 블렌디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블렌디드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집중수업) 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기 개시 전에 ‘집중수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교육과정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등급 부여가 적정하지 않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적은 총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미래융합대학은 학생의 선행학습경험 인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경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22조(학년수료) ① 이수학점에 따른 학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9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제23조(졸업사정 및 심사요건) ① 졸업사정은 120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졸업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2. 교양 및 전공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② 미래융합대학 졸업생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제54조의(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 및 학사운영규정 제125조(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대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는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학과별 이수 학점 총괄표에 의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2. 8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 한 자(조기졸업 대상자는 제외)

제25조(조기졸업) 재학기간 중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은 조기졸업 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26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등록금의 금액, 납부기일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